

-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백년소상공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점검은 서면 또는 현장점검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의7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.

제5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9(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 정기점검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 운영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휴업·폐업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한 영업 지속 여부
2. 법 제16조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요건의 유지 여부
3. 「식품위생법」, 「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
4. 지원사업 참여 및 성과 등 사후관리 사항
5.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의 적정한 유지·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기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 점검대상, 점검 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점검 예정일 7일 전까지 백년소상공인에게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의7(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) 법 제16조의3제1항제4호에서 “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	제5조의7(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법 제16조의2제2항의 후단에 따른 유효기간(이하 “유효기간”이라 한다) 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, 취소, 과징금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	<삭 제>
2. 3. (생략)	1. 2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
<신 설>	제5조의9(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 정기점검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 운영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 1. 휴업·폐업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한 영업 지속 여부

2. 법 제16조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요건의 유지 여부
3. 「식품위생법」, 「농수산물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
4. 지원사업 참여 및 성과 등 사후관리 사항
5.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의 적정한 유지·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기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 점검대상,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점검 예정일 7일 전까지 백년소상공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백년소상공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점검은 서면 또는 현장 점검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단	
연 락 처	(044) 204 - 7280